

2025년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에게 시중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및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8)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통해 세부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 모집호수(모집인원) : 전국 단위 400호(400인)
- 입주대상 주택 : LH가 보유 중(또는 보유 예정)인 청년 매입임대주택
- 신청기간 : 2025. 2. 3. (월)부터 모집호수 도달 시까지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 포함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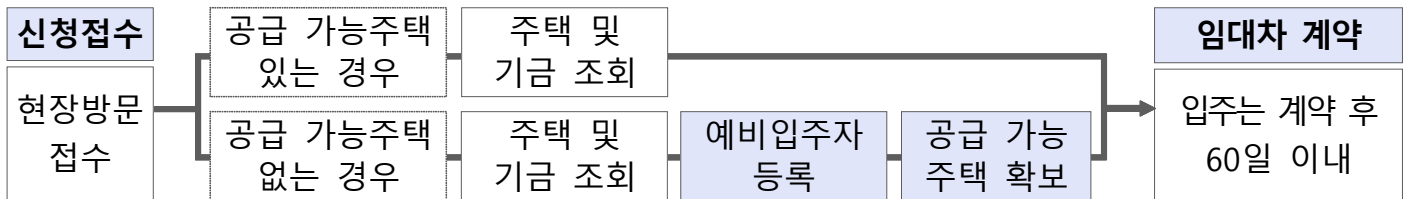
구분	내용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무주택 자격 충족 시 최장 10년 거주)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 가능(최장 20년 거주)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00만원, 시중 시세의 40% 수준의 임대료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지역별 신청 장소에 문의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7%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신청접수 : 평일 10:00 ~ 17:00, LH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현장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 신청 전 전화문의를 통해 공급 가능한 주택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문의처 및 방문접수 장소는 6~9p 확인

■ 신청절차



■ 예비입주자 등록

- 즉시 공급 가능한 주택이 없는 경우 예비입주자로 등록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등록된 경우, 신청 지역의 신규매입, 주택 개보수, 기존 임차인 퇴거 상황 등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등록 단위는 시·군·구 단위입니다. (예 : 경기 수원시 / 전북 완주군 / 서울 마포구)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됩니다.(또는 마지막 순위로 변경)
- 예비입주자의 대기기간 단축을 위해, 예비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공급부서 관할 지역 내 타 시·군·구로 예비입주자 등록 이관이 가능합니다.

* 단, 예비자 이관 시 입주 대기 순위는 이관될 시·군·구 잔여 예비자의 마지막 순위로 변경됨

■ 기타사항

- 신청일 오전 10시 전에 대기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 신청단위(시·군·구)를 다르게 하여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무주택 여부를 검증한 후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전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해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행정복지센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서[첨부양식1]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공고문 첨부양식
자립준비청년 증빙서류 (①과 ② 중 해당하는 서류)	① <u>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위탁가정 보호종료아동</u> - 보호종료확인서 ② <u>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시설 퇴소예정자, 보호조치 종료예정자</u> - 보호확인서(재원증명서 등 가능)	관련기관

4

기타 유의사항

-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보건복지부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 LH 매입·전세 임대주택 거주 중인 자(계약자 포함) -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자 * 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	- 신청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입주관련 (기금대출)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임대사업자에 명도

관련항목	유의사항
	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재계약 자격 등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4회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 또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이고 영구 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입주자가 연장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주택을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 편입·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대상지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기타사항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는 비치 예정입니다.) * 지역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분실, 파손, 훼손, 멸실된 빌트인 제품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빌트인 제품 분실 발생시 임차인은 LH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동(棟)단위로 매입한 주택 내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 신청인은 입주 후 지역편의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지역수요, 주택특성, 입지여건 등에 따라 지역편의시설의 활용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며, 임대료 납부고지서 수령방법은 모바일 또는 이메일 고지서(이빌링)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 1391호, 2024.1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동일주택에 2인 이상이 입주시 주택(공동거주형)에 부과되는 관리비 등은 각 호에 부과된 금액을 1/n로 안분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별 면적 차이가 큰 경우 등에는 실별 계약면적을 안분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확인 등을 위해 LH의 현장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방문조사 요청에 대한 미협조 시 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LH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계약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계약하였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항은 LH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LH콜센터(☎1600-1004),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8)

■ 공급대상지역별 신청 장소

공급대상지역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연락처
서울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LH 서울남부권 주거복지지사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1층, 4층	02-2182-2703
	마포, 은평, 강북, 종로, 중구, 성북, 서대문, 용산, 동대문	LH 서울중부권 주거복지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빌딩 10층	02-6454-2715
	노원, 도봉, 중랑, 광진, 성동	LH 서울동부권 주거복지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빌딩 10층	02-6454-2786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LH 서울서부권 주거복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2층	02-2169-8800
경기	하남, 양평	LH 하남권 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3 모노라운지 A동 2층	031-622-2713
	의정부, 포천	LH 의정부권 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9층	031-822-4061
	남양주, 가평, 구리	LH 남양주권 주거복지지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031-590-6679
	양주, 동두천, 연천	LH 양주권 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963-1 한길프라자2, 5층	031-822-5513
	고양	LH 고양권 주거복지지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고양타워 기계동 5층	031-927-3021
	파주	LH 파주권 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1004번길 33 월드타워8차 6층	031-934-5671
	김포	LH 김포권 주거복지지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 11층	031-8048-5324
	수원	LH 수원권 주거복지지사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6 광교안효빌딩 11층	031-323-9130
	안양, 의왕, 안산, 군포, 과천	LH 안양권 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	031-467-5754 031-467-5710
	성남, 광주(경기)	LH 성남권 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92 야베스밸리 11층	031-778-3119
	용인, 이천, 여주	LH 용인권 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225-6(중동) 쥬네브스타월드 9층	031-280-4731 031-280-4735
	화성	LH 화성서부권 주거복지지사	031-231-0623

공급대상지역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연락처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로 30(병점동, 병점메트로타워) 6층	
	오산	LH 오산권 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 79번길 24, 2층	031-8092-5834
	평택, 안성	LH 평택안성권 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아트타워 2층	031-8094-5029
	부천, 광명	LH 부천권 주거복지지사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281 동화빌딩6층	032-450-8241
	시흥	LH 시흥권 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60번길 28(능곡동 750) 3층	031-362-7708
인천	계양구, 서구, 강화	LH 인천 북부권 주거복지지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34 에이스빌딩8층 (‘24년 6-7월 사무실 이전 예정)	032-717-8595
	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중구	LH 인천 중부권 주거복지지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434 에이스빌딩8층	032-717-8532
	남동구, 연수구, 옹진	LH 인천 남부권 주거복지지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구월동 1542-2), 두용프라자 6층	032-717-5249 032-717-5224
부산	기장군,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LH 부산동부권 주거복지지사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구서동), BN빌딩 3층 (※ 주차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요망)	051-460-6921
	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부산진구, 동구, 서구, 남구, 중구, 영도구, 동래구, 연제구	LH 부산서부권 주거복지지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사학연금회관빌딩 3층	051-460-5937
울산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울주군	LH 울산권 주거복지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79 한화생명 2층	052-932-4821
강원	춘천	LH 강원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팀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1층 주거복지사업부	033-258-4121
	원주, 횡성, 영월, 평창	LH 원주권 주거복지지사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26, 하나로마트 3층	033-737-7731
	강릉, 동해, 양양, 속초, 삼척, 태백, 정선, 고성	LH 강릉권 주거복지지사 강원도 강릉시 울곡로 2846 한국토지주택공사 2층	033-610-5165
충북	충주, 제천, 음성, 단양, 증평, 괴산	LH 충북동북부권 주거복지지사 충북 증평군 중앙로 88 농협홍삼 관리동 3층	043-820-9110
	청주, 진천, 보은, 영동, 옥천	LH 충북남부권 주거복지지사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8층	043-913-1833
대전	서구, 중구	LH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14층	042-470-0889 042-470-0891
	유성구, 대덕구	LH 대전북부권 주거복지지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74번길 12(더그린2차) 1층	042-349-0803 042-349-0808

공급대상지역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연락처
충남	동구	LH 충남남부권 주거복지지사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50(가양동) 나로프라자 5층	042-349-4610
	보령, 청양, 서천, 부여, 논산, 금산, 계룡		
	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 공주	LH 충남북부권 주거복지지사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로 38, 주원빌딩 3층	041-854-8359
	천안, 아산	LH 천안권 주거복지지사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32 코아루웰메이드시티 2층	041-538-5817
전북	전주, 완주	LH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4층 매입임대	063-230-6238
	익산, 군산	LH 익산권 주거복지지사 전북 익산시 선화로3길 16-10 금오빌딩 5층	063-840-0927
	정읍, 순창, 임실, 부안, 고창, 남원, 김제	LH 전북남부권 주거복지지사 전북 정읍시 중앙로 56(금오빌딩) 4층	063-570-2314
광주	서구, 남구, 동구	LH 광주동남권 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339 그랜드타워 4층	062-411-4134
	광산구	LH 광주광산권 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우산동) 우산행복주택 상가동 3층	062-441-2986
	북구	LH 광주북부권 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800번길 11-5 첨단행복주택(H-3)상가 2층	062-410-1955 062-410-1956
전남	목포, 무안	LH 목포권 주거복지지사 전라남도 목포시 수문로 32 남교 트윈스타(2층)	061-983-3310
	순천, 여수, 광양	LH 순천권 주거복지지사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60(kt북순천지점3층)	061-900-4321 061-900-4313
대구	북구, 중구, 남구, 서구	LH 대구북부권 주거복지지사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 1층	053-210-8315
	달서구, 달성군	LH 대구서부권 주거복지지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441(5층)	053-610-9925
	동구, 수성구	LH 대구동부권 주거복지지사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로 40 명진빌딩 4층	053-960-3628
경북	경산, 청도	LH 대구서부권 주거복지지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441(5층)	053-610-9925
	고령		
	칠곡	LH 대구북부권 주거복지지사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 1층	053-210-8315
	구미, 김천, 군위, 의성, 성주	LH 경북서부권 주거복지지사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동로 7 용은빌딩 1층	054-450-3811

공급대상지역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연락처
	안동, 영주, 상주	LH 경북북부권 주거복지지사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166 한양빌딩 3층	054-851-9932
	영천, 경주, 포항, 울릉, 영덕	LH 경북동부권 주거복지지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4, 무진빌딩 3층(한국투자증권 건물 3층)	054-280-4763
경남	김해	LH 김해권 주거복지지사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270 2층 국민은행 장유지점 옆	055-907-8134
	진주, 사천, 하동, 남해, 고성, 통영, 산청, 합천, 거창, 함양, 거제, 의령	LH 경남서부권 주거복지지사 경남 진주시 가호로 13, MBC경남 진주사옥 4층	055-922-1542
	창원, 밀양	LH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15 LH공사 2층	055-210-8463
	양산	LH 양산권 주거복지지사 경상남도 양산시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2층	055-362-7254
제주	제주, 서귀포	LH 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팀 제주시 전농로 100호(삼도1동 305-4)	064-720-1035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문의사항	LH콜센터 1600-1004, 유스타트 상담센터 1670-2288
인 터 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플러스(apply.lh.or.kr)

2025. 1. 23.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 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주택의 범위

- 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②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일

- ①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②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의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 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유스타트(Youth+Start)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유스(youth)+스타트(start)'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LH의 자립준비청년 주거·정착 지원사업의 브랜드 네이밍이며, 새롭게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LH는 자립준비청년·청소년쉼터 퇴소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지원하고, 정착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립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안정된 보금자리 정착과 사회진출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 "유스타트(Youth+Start) 프로그램"의 운영 중인 지원사업은?

1. 꿈나눔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아동양육시설[한국아동복지협회 관리시설]에서 2025년 퇴소(예정)한 자립준비청년 200명 대상 LH 임대주택(건설·매입·전세) 계약시 본인부담 임대보증금 전액 지원(100만원, 1회에 한함) * '24년 퇴소 자립준비청년도 선정 가능

2. 자립준비청년 생활안정 관련 "함께 서기 지원사업"

- LH 임대주택(건설·매입·전세)에 최초 입주한 자립준비청년·청소년쉼터 퇴소자 400명 대상 자립생활 교육 및 소형가전 등 생활안정 패키지 지원

3. 주택청약저축 가입·납입 지원사업

- 우리은행 주택청약저축 통장 신규 개설시 매월 납입금 2년 지원(월 2만원, 총 48만원 지원)

- 유스타트(Youth+Start) 프로그램 개요 -

(‘25.1월 기준)

구분	꿈나눔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함께 서기 지원사업	주택청약저축 가입·납입 지원사업
지원 자격	'25년 아동양육시설을 퇴소(예정)한 LH임대주택 계약·입주자 * 가정위탁 보호종료자, 청소년쉼터퇴소자 제외	2024년 8월 ~ 2025년 7월 LH임대주택 최초 계약(입주)자 * 지원자격 변동될 수 있음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	임대보증금 100만원 전액 지원(200명)	맞춤형 정착관련 교육 및 생활안정 패키지	월 2만원 2년간 지원
지원 방법	계약시(또는 계약이후) 신청서류를 한국아동복지협회에 제출 * 한국아동복지협회 02-790-0818 www.adongbokji.or.kr	신청링크를 통한 접수 * 세이브더칠드런 02-2126-4029	대한적십자사 온라인 신청 * 대한적십자사 콜센터 1577-8179
협력 기관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한국씨티은행, 세이브더칠드런	우리은행, 대한적십자사

* 지원 프로그램별 상세 내용은 관련 콜센터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프로그램 예산 소진시 프로그램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유스타트(Youth+Start) 상담센터 1670-2288 [평일 9-18시, 토·일·공휴일 제외]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전용 상담서비스 제공

자립준비청년 주거·정착지원 사업안내 QR코드



[첨부양식]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할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내역, 신청인과의 관계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